

—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—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5월 18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5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5월 25일

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웅

나. 제안이유

-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신설
- 호당, 연도당 300원

라. 참고사항

-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
(건설교통부령 제425호, 2005. 2. 12)

○ 경북도 재정과-3196(2005. 2. 23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택 환

- 본개정 조례안은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